

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6 - 1호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1월 27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사용료(전용·연습 사용료) 감면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·연습 사용료 30퍼센트 이내 감면 조항 신설
(안 제10조제1항4호 및 동조 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6년 2월 1일까지**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 강서구의회

(전화 : 2600-1807, 팩스 : 2600-1840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
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제2항 중 “50퍼센트”를 “50퍼센트, 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30퍼센
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제9조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② 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<u>50퍼센트</u> 이내로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| 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<u>경우</u> 에는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경우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<u>50퍼센트</u>, 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<u>30퍼센트</u> 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

관 련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<개정 2012.3.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.>

【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】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<신설 2012.1.17.>

【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9조(사용료 등의 징수)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8 까지 정하는 범위에서 전용사용료, 연습사용료, 상업사용료,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, 부속설비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(개정 2003.4.7, 2004.11.30, 2010. 3.31, 2012. 7.18, 2015.6.24)